

## 제 68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7월 8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7월 8일 하오 1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전원  
결석의원 없음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제 65회 1, 2차 제 66회, 제 67회 1, 2, 3차 회의록 통과
- 빙설협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 1)목포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의 건
- 2)목포시 중앙 도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의 건
- 3)목포시 제 1회 공채조례 제정의 건
- 4)단기 4290년도 제 4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의 건

8. 토의사항

◎ 제 65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65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66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67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67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67회 제 3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김 경 인 의원

- 회의록 통과절차에 있어서 의장에게 요망한다. 회의록 비치의 사명이 결코 경한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므로 오늘과 같이 5, 6회분을 일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반드시 그 전회분은 차기의회에 보고토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 이에 대한 강영락, 김일섭 의원의 찬조발언이 있었음.

◎ 빙설협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

서기 박찬대 낭독

◇정 응 표 의원

- 별지 유인물(빙설 타합사항)과 여(如)한 요지의 발언이 있었고 빙과상의 편의만을 도모하고 빙설업자의 존재를 무시한 집행당국의 처시를 비난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에 대한 사회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하는 바이다.

◇김 경 인 의원

- 청원이라든가 진정서를 접수하였을 적에는 지방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회의의 개최를 기다리지 않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한 이후 본 회의에 상정케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규칙으로서 발언하는 바이다.

#### ◇김 상 대 의원

- 2대 시의회가 구성이래 사종(斯種)주민의 청원서가 쇄도하여 시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즉 향동시장의 강성심 문제, 유천서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등 행정부 측에서 세심의 주의만 경주하면 여사한 사례가 야기 안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본 건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한 이후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 김경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김의장, 정응표 의원, 강영락 의원간의 찬부 발언이 있었음 (초안 참조)

- 김상대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조 양 순 의원

- 제 2대 시의회 구성이래 의회의 결의로서 집행부에 이송한 청원서의 처리결과 및 의회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이 미진된 안건이 수다할 것이니 이를 종합하여 내 10일 개최되는 제 2차 회의에 보고케 할 것이 아니라 금일 오후 회의에서 즉각 보고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 - 칠청까지 있었다.

- 개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5표 부결되다.

- 동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찬성 9표 가결되다.

◎ 각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결과보고

◇김 경 인 의원

- 각 국민학교 조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학구 월구관계 및 사친회비 전별금 관계등 조사하였던 바 교육위원회의 노력으로 선처되어 있으며 깨끗이 되어있었습니다.

(상세 초안 참조)

◇김 성 균 의원

- 각 동 관계 조사결과 보고는 명 10일 개최 제 2차 회의에 전 동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 부산물 관계 조사결과는 현금 조사중에 있으니 본 건 역시 내 10일 보고기로 하겠습니다.

◆ 부의안건

◎ 목포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의 건

서기 박찬대 제안 이유설명

◇의장 김삼성

- 회의규칙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다.

◎ 목포시 중앙 도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의 건

서기 박찬대 제안 이유설명

◇김 상 대 의원

- 본 건 조례개정은 개정을 하여보았자 조례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으니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안참조)

◇김 성 균 의원

- 선진국가에서도 사업장수입을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측은 제반 경비 절약에는 몰두하나 세입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실이 개재되었으나 집행부측의 무능 혹은 태만으로 지적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본 조례안의 심의는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사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상대, 김성균 의원을 포함한 산업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중앙 도매시장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케 할 것을 동의하다.

◇김 경 인 의원

- 각 사업장 균등의 철저한 감독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고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김 남 진 의원

- 본 건은 집행부 측의 성의 결여와 아울러 대행업자 측의 무성의로 기인한 것일 것이다. 우리의회에서도 이대로 묵과불능이니 본 조례 11조 의거 기일유예를 두어 제반 불이행 조항의 이행을 집행부 측에 건의토록 하자.

◇정 응 표 의원

- 과거부터 수차에 걸쳐 의회 있을적 마다 누차 본 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었으나 집행부 측은 마이동풍 격이다.

- 향간에 유포되고 있는 말에 의하면 시청간부와 대행업자간 결탁운운의 설이 있으며 그 위신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의 차이의 극심함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간부의 위력에 못이겨 한 일이라면 기탄없이 공개하라.

◇김 경 인 의원

- 중앙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세입에 대한 관심을 너무 갖지 말자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상세초안 참조)

◇김 남 진 의원

-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의 실정으로 김경인 의원의 발언과 같이 중앙도매시장을 존치 함으로써 영세농민을 울리는 암이 된다면 차라리 계약해제라도 하였으면 쓰겠다.

- 강영락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제 4회 세출 경정예산의 건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하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 내무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할 것을 선언.

◎ 목포시 제 1회 공채조례 제정의 건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강 영 락 의원

-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의케한 연후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폐의 선언하다.

( 하오 1시 10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7월 9일

시의원 명 남 철

시의원 김 상 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68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7월 10일 상오 10시 1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7월 10일 하오 4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부의장 정 응 표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이정권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各科장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농지분배에 대한 진정서 처리의 건
- 2)해양고등학교 진정결과보고
- 3)각 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 4)각 동 관계 조사 결과보고
- 5)부산물 관계 조사 결과보고
- 6)각종 민원서류 중 행정부 이송안건 처리 전말보고

#### ◆ 부의안건

- 1)목포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 의 건
- 2)단기 4290년도 제 4회 수도 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
- 3)단기 4290년도 제 3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4)목포시 중앙 도매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 의 건

5)목포시 제 1회 공채 조례안

8. 토의사항

◎ 농지분배에 대한 진정서 처리의 건

◇서기 박찬대

- 무안군수로부터 처리결과 통고문 낭독이 있었음.

◎ 해양 고등학교 관계 진정 결과보고

◇명 남 철 의원

- 문교부 당국과 교섭한 결과, 91년도 예산에는 기어(히)반영 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귀임 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각 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강 영 락 의원

- 중앙 도매시장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부당이익만을 주고 그 존립의 사명인 영세시민의 복리를 가져오는 점이 없다고 보아져서 대행업자와의 계약해제를 함으로써 상수도 공사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매각처분하기로 결정을 보고 개정조례안 만든 무수정 가결을 보았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문사위원회에서 심의케된 빙설업자로부터 제출되었던 진정서에 대하여는 현재 허가건수 52건은 과다하오니 적의 축소시킬 것을 집행부측에 건의키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 일 섭 의원

- 내무위원회 회부안건 조사 결과보고
- 시세조례중 일부개정안, 제 1회 공채조례안 및 단기 4290년도 제 4회 수특 경정예산안 등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 각 동 관계 조사 결과보고

◇김 상 태 의원 보고

- 용당동 : 농사구동으로서 직원수의 부족을 느꼈으나 사무처리가 잘 되어 있었다.
- 산정 1구동 : 반적부(班籍簿)가 미비되어 있었다.

◇김 성 균 의원 보고

- 산정 2구 : 동 직원 근무상태는 동장이 타업무이기 때무래 굴내벗은 말과 흡사하였다. 이후 가일층 시정있기를 요망한다.
- 산정 3구 :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불식하고 동정 운영이 혁신적(혁신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었다.

- 그러나 현금의 각 동 운영상황을 개관컨대 동장 관선당시보다 극히 저열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시정계에 요망하는 것은 동 직원의 인사 조치는 반드시 당해 동장의 의견을 참작하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보고

- 대성 1구동 : 동장이하 전 직원 그 집무상황이 지극히 양호하였다. 소맥분 배급상황은 그 가격이 시판가격과 동등하기 때문에 안타까웠다.

- 대성 2구동 : 소맥분 배급으로 말썽이 있었던 관계로 세밀히 조사하여 보았다.

미가 조절 양곡에 동 직원이 자기형님 명의로 수배하려는 자가 있었기에 즉시 취소시키도록 조치하였다. 소맥분은 지역이 광대한 동으로서 단시일 내 배급토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미 수배량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7반장과 32반장에게 연락하여 28포대를 매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동장이나 동 직원이 동 경비에 충당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 집행부측에 참고로 말하는 바이나 일반시민에게 배급할 것은 밀가루는 불필요한 것이며 수배기일은 긴급지시를 피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박 두 순 의원 보고

- 양동 : 방출미 배급상황은 비합법으로 배급한 세대가 50세대 이였고 정실배급이 200세대나 있었다. 소맥분 배급은 잘 되어 있었다.

동장의 직원통솔도 원만이 되었었다.

- 북교동 : 소맥분 배급은 잘 되어 있었으나 방출미 배급에 근거가 전연없는 것이 15세대 정실배급이 60세대 이였고 정당배급이 14세대 밖에 없었다.

◇김 일 섭 의원 보고

- 죽교 4구동, 죽동, 무안동 등 원만히 잘 되었었다.

◇김 경 인 의원 보고

- 본 의원이 담당하였던 호남동과 남교동은 사정에 의하여 김일섭 의원과 이정권 의원에게 대리로 조사토록 의뢰하였던 바 동정 운영이나 제반 배급상황이 상부지시대로 원활히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시의 중심동이고 아울러 동장 재선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은 것으로 본다.

◇김 상 대 의원 보고

- 영해동 : 마땅히 처무규정을 준수이행 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외출 및 허가없는 장기 출장 등 감행하여 놓고 출근부 날인은 빠지 않고 되어 있었으며 소맥분 배급은 양호하나 조절 양곡배급이 호별세 등급을 도외시한 경향이 있었다.

- 동명동 : 잘 되어 있었다.

- 참고로 말하나 민선동장이 관선 당시보다 뒤떨어진 감이 있었다.

◇임 석 희 의원 보고

- 유달동과 만호동을 보았으나 하등의 부정이 개재됨이 없이 동장이하 전 직원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잘 운영되고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보고

- 서산, 온금, 죽교 5구동 등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다.

◇명 남 철 의원 보고

- 죽교 1, 2, 3구동 등 역시 잘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의장 김 삼 성

- 대성 2구, 영해동, 산정 2구동 등 향간에 의혹이 많았었으나 이러한 기회에 발표하였으므로 해서 모든 의아가 일소될 것으로 믿는다. 제직원이 지적한 동은 앞으로 가일층 분발시정 하기를 요망한다.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저반 당시 의회의 결의로써 무등산호 매각처분 반대 건의문을 도 의회측에 제출한 바 있었거니와 도의회 분과 위원등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케 되리라는 말을 듣고 또한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그리고 도유 재산인 무등산호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케 된다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매각처분을 보류하여준 데 대한 감사문을 도 의회측에 발송하되 문안발의는 의회간사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각종 민원서류 행정부 이송안건 처리전말 보고

◇총무과장 장 건 식

- 참전 전우회 및 수성사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음 (상세초안 참조)

◇산업과장 김 연 수

- 강성심 관계(상세초안 참조)

◇건설과장 이 춘 흠

- 유달 제재소 및 탕옥 조합관계

◇이 부시장

- 동 연합회 해체관계

◎ 빙설협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

◇김 창 희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전기 회의에서도 누누이 논의한 바 있었거니와 하계 동안의 수입으로 1년의 생계를 유지하는 빙과상과 빙설업자간의 분류문제인데 집행부 당국은 빙설업자 40건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과업자에게 16건을 겸업허가 시킴으로써 영세업자인 빙설업자에게 생활에 위협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오니 빙과상들은 영세 빙설업자를 살린다는 견지에서 7월말까지를 겸업토록 할 것을 조건부로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

◇김 경 인 의원

- 빙설업자 축소건의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믿는다.

◇강 영 락 의원

- 이에 대한 찬조발언이 있었음

◇김 창 희 의원

- 동의철회

◇김 성 균 의원

- 본 건 진정서의 골자가 빙과업자는 빙과만 하여달라는 것일 것이다.

- 본 건에 대하여 행정부측에 빙과업자에게 겸업허가를 해주었던 법적근거를 물었더니 문교사회국으로부터의 조회문에도 위생시설완비 되었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허가 근본목적인 위생시설완비와 업태유지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시내

56건은 과다하오니 적의 축소시킬 것을 집행부 측에 건의할 것을 동의.

◇강 영 락 의원

- 빙설업자 측은 상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서를 내놓았던 것이고 그 반면에 16건 빙과업자는 이해관계가 개재된 것이다.

본 건 법적 근거로 보아서는 빙과업자에게 겸업허가를 하여줄 수도 있고 안 하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회문제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하겠고 우리의회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계획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40여명의 영세업자가 생계에 위기에 봉착하였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16건의 허가를 감행한 이면에 작년도의 예를 보아서라도 집행부 측에 모종의 불미스러운 복선이 개재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작년도의 실적인 30건 내외로 환원시키도록 집행부 측의 아량으로써 축소시키도록 개의하는 바이다.

◇정 응 표 의원

- 제 의원께서 빙설업자를 동정하는 발언으로 귀일된 대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집행부 측은 본 건에 대하여 행정방안이 졸렬하였고 위생사무 집행에 맹점을 폭로시켰다. 그 이유로는 당초에 빙설위생협회 정관을 시 당국에서 승인하여놓고 그 정관을 인정 않았던 것이다.

- 즉 빙설업자의 허가는 반드시 빙설위생협회를 경유하게 되어있고 이중허가는 안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16건을 자의로 허가하였다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관은 민을 돌려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 업자간의 거리는 백 미터 거리는 두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측문한 바 주무당국은 모 업자의 주연에 초치하였다는 등 불미스러운 말이 들리고 의회 있을 때마다 사중 진정서 사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불만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이다.

◇김 경 인 의원

- 본 건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장시간 논의케 된 책임은 집행부 측에서 부하하여야 될 것이다. 허가를 16건 증발하였음은 빙설업자와 빙과업자간 공존공영이 불가능한 까닭일 것이다. 이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이 집행부 측

에서 이에 대한 경로를 말해주기 바란다.

◇김 남 진 의원

- 먼저 행정부 측에서 위생협회를 인증하였는가 여부를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사회과장 박 규 성 답변

- 이 문제로 하여금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의회에서까지 장시간 논의  
케된 책임을 심심사과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이권에 관한 문제는  
사전에 유기적인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하여 드립니다. 빙과업자에게 빙설허  
가를 16건 증가시킨 이유는 빙과상들은 왜정대부터 빙과기에서 자연 발생하  
는 냉동을 이용하기 위하여 비공식으로라도 빙설업을 겸업하였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취체당국에서 압만(아무리) 제재하여도 불응하는 현상임으로 부득  
이 정식허가를 하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문제는 당초 빙설업자 허가  
당시는 100미터를 넘는 거리로 되어있었으나 빙과업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빙설협회 정관 인증 여부문제는 관청이 일개 임의 단체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를 인증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사무취급자의 무  
식에 기안한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나 진정서를 제출케 된 원인은  
빙과업자가 빙설업자를 탄압하고 빙설업자는 이를 독점하려는 배타적 심리  
가 개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창 희 의원

- 빙과상에 대하여 빙설업을 겸업하지 말라는 법규도 없는 것이고 위생 시  
설면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빙과상측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허가관청의 입장으로 하여서도 일단 허가한 것을 취소시킨다는 것도 관의  
위신에 관계된 문제이오니 빙과상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는 겸업하도록 피차  
양보하여 처할 것을 집행부에 일임토록 재개의.

◇사회과장 박 규 성

- 업자쌍방의 협상을 기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으니 집행부에 일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별 표결상황

김창희 의원 재개의 : 재석 15명 중 가 6표 부결

강영락 의원 개의 : 삼청 없으므로 폐기

김성균 의원 동의 : 재석 15명 중 가 9표 가결

◇의장 김 삼 성

- 오전회의를 휴회하고 하오 2시정각 속개선언

- 정응표 부의장으로 사회교체

◇부의장 정 응 표

- 오후회의 속개 선언하다.

( 하오 2시 현재 )

◎ 목포시 시세조례 중 일부 래정의 건

◇김 창 희 의원

- 본 건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심히 검토한 안건이오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중앙 도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의 건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제 4회) 세출 경정예산의 건

◇의장 김 삼 성

-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제 1회 공채 조례 제정의 건

◇김 경 인 의원

- 본 건 당시 상수도 문제는 부득이한 조치라 하였으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중앙 도매시장은 세수입면으로 보아 별무영향이고 백해무익이니 대항자 측과 계약해제 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토록 동의하다.

◇김 창 희 의원

- 도매시장의 대지는 260여 평의 거대한 시유재산으로서 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차제매각 처분하여 목하 진행중인 상수도 공사비에 전용시킬 것을 동의집에 첨가.

◇김 상 대 의원

- 작일 본 건 조사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결과 계약취소를 단행할 것까지 결정을 보았던 것이나 본 의원의 근본취지는 그 것이 아니였고 시세입의 보강책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오니 차제 미수된 보증금의 완전징수까지 부대시킬 것을 동의집에 첨가한다.

◇조 양 순 의원

- 본 건 시장설립 당시에 본 의원이 개입되었었고 목하 해시장 존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린다.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설립을 원

만히 하여줌으로써 대행업자가 그 의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타 선진 도시는 시장에 대한 국고 보조의 은전이 있었으나 당 시는 우금 한번도 없었던 것이며 시장허가 당시에도 대행자들이 운동하여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금은 청과물 시장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점차 잡혀지고 있으며 만약 선창에 자유매매를 방임한다면 횡행하는 선창깡패들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리고 즉각 계약해제를 감행한다면 주주들의 손해가 우심할 것이니 심사숙고하여 처결하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 ◇하 시장

- 이 문제를 위요하고 제 의원께서 심히 토의하여 주시는 것이나 의회측의 결의라면 상부관청과 연락하여 휴업계라도 받아 두겠으나 청과물의 집산 및 동절기의 야채 등 자유판매에 방임할 수 있을 것인지 의회측에서도 대체적 방안을 타협하여 상부관청의 하문이라면 즉시 응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계약 해제에 대한 것은 동감이고 대지매각대금 700여만 환의 수입에 대한 욕심은 지대한 것이나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필요하고 그 후의 잠정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이어서 강영락 의원 동의에 대하여 김일섭, 김남진 의원 등의 찬성발언이 있었음.

#### ◇명 남 철 의원

- 설립자 대 대행자 측의 계약이행을 안함으로써 해체하자는 안이 나왔으니 일응 본 건 집행부에 일임하여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최대한의 계약이행을 종용하도록 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 ◇김 남 진 의원

- 대단히 좋은 말이라 하겠으나 개항 이래 전무후무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당 시의 입장으로서는 3,000만환의 공채를 발행토록 되어있고 중앙도매시장에 시간적 여유를 주어보았자 시급 개선될 문제가 아닌 것이니 즉

각 표결에 붙이도록 하자.

- 표결결과

명남철 의원 개의 : 재석 15명 중 가 3표로 부결되다.

강영락 의원 동의 : 재석 15명 중 찬성 11표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이유 설명하다.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외에 회의규칙 개정안도 남아있으니 본 건 전문위원회에 회부심의  
토록 하고 회기를 1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명 남 철 의원

- 법정 회의시간도 아직 남아있으니 금일 중으로 결말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경인 의원 동의하다. 표결결과 가 6표로 부결되다.

◇임 석 희 의원

- 본 건 전문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하기 위하여 10분간 휴회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하오 3시 10분  
현재)

◇부의장 정 응 표

- 속개 선언하다.

(하오 3시 20분 현재)

◇김 일 섭 의원

- 본 건 내무위원회에서 심히 검토한 결과 원안통과를 보았습니다.

◇임 석 희 의원

- 전문 위원회에서도 심히 검토하여 상정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통과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

◇강 영 락 의원

- 제안이유 설명하다.

◇김 경 인 의원

- 찬성 발언하다.

◇김 남 진 의원

- 강영락 의원의 개정안에 회의규칙 제 30조의 개정은 찬성하나 기타는 반대하는 바이다.

- 임석희 의원 이석

( 하오 3시 50분 현재 )

◇김 경 인 의원

- 본 건 회의규칙은 당 시의회 21명 재적당시의 입법자의 입법정신 이였을 것이고 현금 16명으로 감소한대 대한 자체적인 조치일 것인 바 야당 측에서 제안하였다고 하여 아전인수격으로 볼는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고 모순된 점을 시정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김남진 의원 발언은 정치적 관념을 떠난 말이었을 것이다.

◇김 남 진 의원

- 강영락 의원 안을 축조 가부 표결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일 섭 의원

- 법정시간인 오후 4시가 임박하였으니 회의시간 무제한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정 응 표

- 강영락 의원 안 축조 표결 선언하다.
  
- 표결결과  
제 19조 재석 14명 중 가 6표 부결  
제 27조 재석 14명 중 가 5표 부결  
김경인, 강영락, 조양순, 김상대, 박두순 의원 퇴장 (하오 4시 15분 현재)  
제 30조 재석 9명 만장일치 가결  
제 44조 재석 9명 중 가없음 부결  
제 55조 재석 9명 중 가없음 부결  
제 59조 재석 9명 중 가없음 부결  
제 6조 재석 9명 중 가없음 부결

◇부의장 정 표

- 폐회 선언하다. ( 하오 4시 20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7월 11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